

[]총포 []도검 []판매업
 []화약류 []분사기 []임대업
 []전자총격기 []석궁 허가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법인명		
	사무소 소재지		
	대표자		(전화번호 :) 주민등록번호
	주소 (전화번호 :)		

신청 내용	상호		
	사무소 소재지		
	판매업(임대업)명		
	판매소(임대업소) 소재지		
	판매(임대)종류	월 판매(임대) 예정량	
	보관 또는 저장방법	영업개시일	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6조제1항(제6조의2제1항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(제16조의3)에 따라 위와 같이 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) 판매업(임대업)의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경찰청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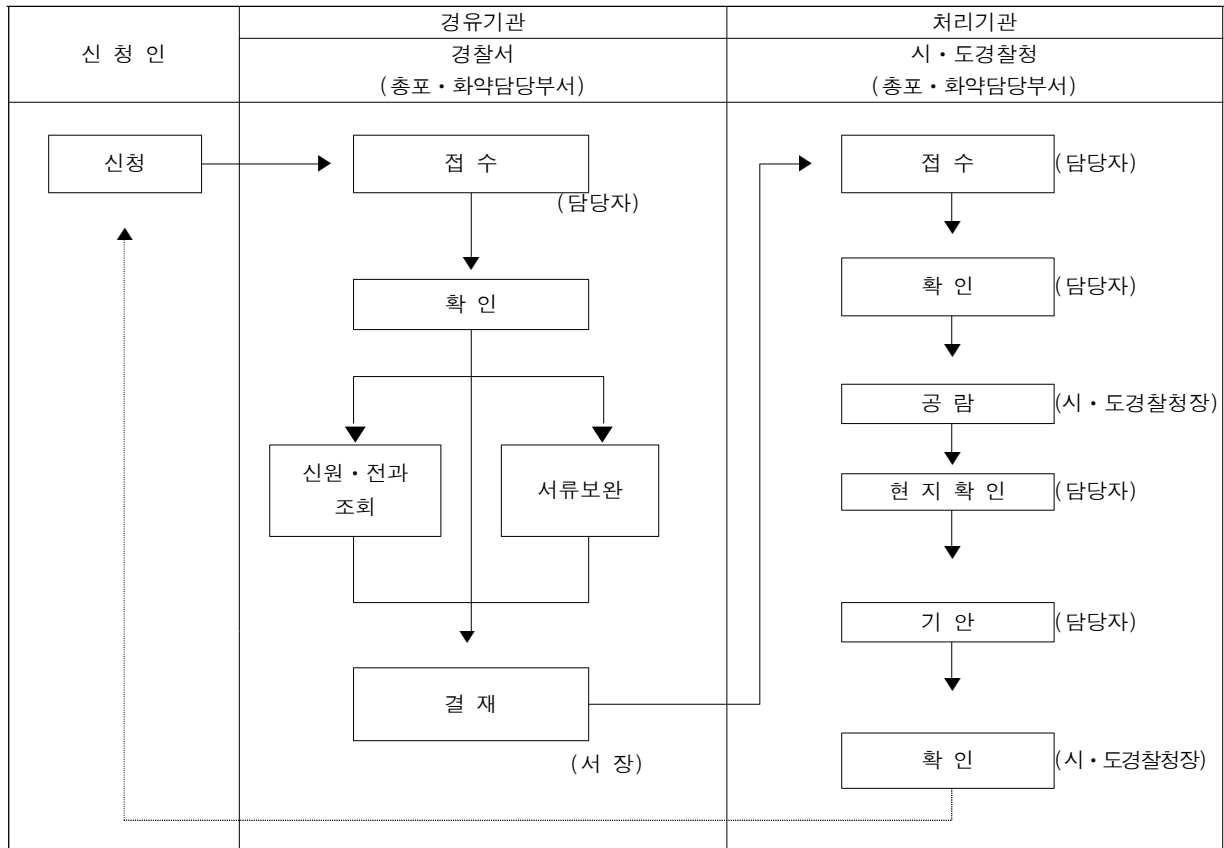
신청인 제출서류	1.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(화약류판매업인 경우는 제외합니다) 1부 4.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각 1부	수수료 뒤쪽 참조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유의사항

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판매업소(임대업소)의 위치·구조·설비
- 나. 판매하려는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 또는 임대하려는 총포·도검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의 종류
- 다. 관리 또는 그 밖에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
- 라. 보관 또는 저장방법
- 마. 안전교육계획서(화약 판매업만 해당합니다)

처리절차



수수료

- 1. 총포·도검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 판매업 · 임대업 허가: 15,000원
- 2. 화약류 판매업 허가: 20,000원